

2000. 5. 19(금)  
제6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도 시 위 원 회

#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0. 4. 24 제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0. 4. 24

다. 상 정 일 자 : 2000. 4.28(제59회임시회산업도시위원회제1차회의)  
2000. 5.16(제60회임시회산업도시위원회제1차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교통과장 신천순)

### 가. 제안사유

-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 태조왕건 촬영장등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

### 나. 주요내용

- 제 3 조
  -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조항 신설
  - 장애인 차량 주차요금 감면규정 개정
- 제 5 조
  -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민영노외 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규정 삭제
- 제 6 조
  -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제 15 조
  - 건축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용태)

#### ▣ 법적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관계법령인 주차장법과 건축법시행령(건물에 부속된 부설 주차장)의 개정으로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 행정적 검토

- 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수의계약 조문을 살펴보면(제6조1항)
  -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둔 것은
  -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수의 계약 방법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 기타 단체(장애인등 요보호단체)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검토를 요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 전국 대부분의 주차장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월군등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수의계약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체제의 논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특정단체만을 위한 수의계약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장애인단체는 생활능력이 없고 특별히 보호를 요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사유재산인 주차장(도로)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탁관리 하려함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보호를 요하는 단체가 적지 않으리라고 봄)
  - 이들 단체를 보호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차장 임대와 아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사료됨.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1)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었을시 연간 수입되는 수입액과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최상귀 의원)
- 2) 조례상 수익계약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계약할 당시에 수익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가? (민경완 의원)
- 3) 임대차 계약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비를 안 받는 방향으로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최상귀 의원)
- 4) 태조왕건 셉트장과 인접한 금월봉 지구, 만남의 광장, 수경고사분수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이종호 의원)
- 5) 계약기간이 10년인데 1년후에 수익성이 없어 토지주가 계약을 파기하고자 시설물을 철거 요구시 조치계획은? (박연길 의원)
- 6) 관광지 주변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금하고 있는 입찰제도가 수익계약 쪽으로 풀리게 되면, 시에서는 무리가 있을텐데? (민경완 의원)

### 나. 답변요지

- 1) 연간수입액은 1억 4,000만원 정도이며, 주차장 포장은 솔시멘트로 하는 것으로 5,000만원, 관제시설 3,500만원, 기타 1,500만원 총 1억정도가 더 필요한 예산임(문화관광과장 윤종섭)
- 2) 입차료 문구를 5대 5로 이익금을 분배하겠다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위반한다는 사항보다는 공공성을 봤기 때문에 택하였으며,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할려 했으나 충북도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지외에는 돈을 받아서는 안되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받도록 하라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 3) 주차비 무료는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없고, 이익금등의 운영을 해 보고 대처토록 하겠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 4) 관광진흥법상 지구지정을 받은 금월봉, 교리, 능강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그외는 받을 수 없어 특례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 5) 토지소유자가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고, 10년 후에는 제천시장이 환원해 주어야 함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 6) 일반 시내 24개 공영주차장은 운영상 문제점이 없음 (교통과장 신천순)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 6. 토 론 요 지 (민경완 의원)

○ 본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일반 관광지 주변 주차장을 토지소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과 기타 장애인 주차요금체계 문제, 기타 등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이나 이는 주차장 부지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에서 매입을 하여야 하나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한 듯 한 인상이며,
-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했을시 관광객의 감소와 제천시 이미지 손상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 현 조례상 입찰제로 되어있는 것을 수의 계약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이번 임시회(59회)에서 심의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좀더 심도있게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동의를 구하는 바임.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